

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51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02. 21.

허옥희 의원 등 7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3. 12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3. 21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허옥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·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·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11호
 - 예고기간: 2024. 3. 4.(월) ~ 2024. 3. 11.(월) [7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장혜정)

-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·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 -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.
 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 -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음.
 -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4조~제5조)
 -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
 -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(안 제6조~제7조)
 - 지원 대상자와 지원사업을 적정하게 규정하였음
 -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 등(안 제8조~제9조)
 -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
 -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,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3. 21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